2015년 2월 2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2월 24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• 김봉덕 과장(042-481-4399) • 전일홍 사무관(042-481-4443)

# 중기청, 뿌리기술에 희망의 숨을 불어넣다.

## – 뿌리기술 전문기업 전용 R&D사업 50억원 신설 –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**뿌리기술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제품·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(R&D)을** 위해 **50억원을 처음으로 지원**한다.

○ 개발기간은 **최대 1년간, 1억원 한도로 2회(3·8월)에 걸쳐 지원**할 계획이며, **1차분은 3월 11일부터 25일**까지 신청·접수받아 **6월까지는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중소기업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*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, 다만, 1차(3월) 신청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이전까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신청자격이 인정된다.

* '뿌리기술 전문기업'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핵심 뿌리기술 보유기업 중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의 지정 요건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(※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: wwww.root-tech.org)

□ **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**은 뿌리산업의 **제품적용기술과 공정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지원하는 R&D사업으로**,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**보유기술과 제품의 부가가치**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.

○ '13년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, 처음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만의 특화된 R&D사업이 신설되는 셈이다.

□ 신청기업 중에서는 **50인 미만 소기업과 정부 R&D 미 참여기업**에 **가점이 부여**되고, 현장·대면평가시 **사업화 및 수익창출이 용이한 과제를 우대**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**2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**하고, 신청과제에 대한 **추진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일대일 상담**도 병행한다.

* 3. 5(목) 14시 :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
* 3. 6(금) 14시 :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

□ 본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·접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일홍 사무관(☎ 042-481-4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 1** **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공고문**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- 66호

# 2015년도
#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공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『2015년도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**2015년 2월 25일**
**중 소 기 업 청 장**

## 1. 사업개요

□ **사업목적**

○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
□ **지원규모** : 50억원

□ **지원대상** : '뿌리기술 전문기업'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

□ **지원내용** :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

○ **(제품적용기술)** 기존 제품의 성능·생산성·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

○ **(공정기술 고도화)**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, 환경대응기술, 생산성향상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

## 2. 지원금액 및 한도

□ **출연금 지원기준**

○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75%이내

○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%이상을 부담

* 민간부담금 총액의 2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□ **지원조건** :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, 1억원 이내(기술료 10% 징수)

## 3. 신청자격

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

* 단, 1차(3월) 신청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전까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청자격 인정

※ 뿌리기술 전문기업 :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, 지정요건(기술역량, 경영역량)을 충족한 뿌리기업

※ 문의 :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(www.root-tech.org)

## 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**신청기간** : 총 2회, 1차(3월)·2차(8월)

| 구분 | 접수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차(3월) | 11일 ~ 25일 | 신규과제 |
| 2차(8월) | 11일 ~ 25일 | 신규 및 재신청 과제 |

□ **신청방법** :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(www.smtech.go.kr) 신청,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

*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, 위탁기관 참여 가능

○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

*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1~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

|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
|---|---|---|---|
| 회원가입 | 온라인 직접입력 |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| 접수 확인 및 완료 |
| - | **사업계획서 Part Ⅰ** | **사업계획서 Part Ⅱ** | <접수증 출력> |

**① 1단계 : 회원가입**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
**② 2단계 :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**
-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
**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**
- 사업계획서 Part Ⅱ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업로드
-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

**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**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·접수 완료)
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)

## ○ 신청시 구비서류

| 연번 | 서 식 명 | | 제출방법 | 해당여부 |
|---|---|---|---|---|
| ① |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| Part Ⅰ | *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| 필 수 |
| | | Part Ⅱ | *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 | |
| ② |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| | | |
| ③ |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| | | |
| ④ |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| | | |
| ⑤ |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| | | |
| ⑥ |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<br>※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| | * 스캔하여 업로드 | |
| ⑦ |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| | | |
| ⑧ | 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<br>*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 | | *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 | 해당시 |
| ⑨ |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<br>*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 | | | |
| ⑩ |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| | | |
| ⑪ |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| | | |
| ⑫ | 사업계획서 보완비교표 | | | 재신청 과제 |

## 5. 선정절차

### □ 지원과제 선정




* 주관기관(중소기업),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, 관리기관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)

### □ 평가절차 및 일정

*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## ① 요건검토 (3, 8월)

○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(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) 검토

#### ② 현장평가 (4~5월, 9~10월)

○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사업의 과제내용, 참여자격,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

#### ③ 대면평가 (5, 10월)

○ 기술개발 필요성,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

#### ④ 지원과제 선정 (6, 11월)

○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

## 6. 지원제외 사항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 등)가 국세·지방세 체납자인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). 다만, 회생인가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,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대표자 등)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(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). 다만, 회생인가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,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,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
□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
○ 다만,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,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,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
□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
○ 다만, 공통공정기술 및 반보기술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복성 검토기준 완화 적용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## 7. 탈락기업의 재신청

□ 최종 선정 탈락기업은 금년 접수기간 중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

○ 신청방법 :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,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온라인(www.smtech.go.kr)에 재신청

## 8. 기타 공지사항

※ **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**하며, '주관기관'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,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

□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

*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(예 : 상하반기)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,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

*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

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
○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

-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

- '중소기업 R&D기획역량 제고', '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', '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', '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'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
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(사업신청 불가) : R&D졸업제

○ '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,

- 개별 중소기업당 '저변확대'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'저변확대'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

*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

* 'R&D기획역량제고', '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', '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', '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'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

* 단, 'R&D기획역량제고'의 R&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, 사업신청 불가 사항(참여횟수 제한)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&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

* 연도별 '저변확대' 및 '선택집중' 사업 현황 :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및 [붙임1] 참조

- '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'은 '15년부터, '산학연협력기술개발'사업의 참여기업은 '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

**< 저변확대 사업 >**

| 제품·공정개선 | 산학연 (이공계서포터즈 제외) | 창업 | 기업서비스 |
|---|---|---|---|
| 총 4회 | | | |

⇨

**< 선택집중 사업 >**

| 기술혁신 (기업서비스제외) | 융복합 | 상용화 | 시장창출형 |
|---|---|---|---|
| 제한無 | | | |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□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

## 9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| 담당기관(부서) | | 문의사항 | 전 화 |
|---|---|---|---|
| 사업총괄 | 중소기업청(기술협력보호과) | 시행계획 공고 | 1357 |
| 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중소기업 R&D고객센터) | 신청·접수, 유의사항 등 | |
| 관리기관 |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|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 등 | 02)2183-1625 |

※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www.smtech.go.kr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www.smba.go.kr
-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: www.kpic.re.kr

※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문의
-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 : www.root-tech.org

<붙임 1>

# 연도별 '저변확대' 및 '선택집중' 사업 현황

| 연도 | "저변확대" 사업명 | "선택집중" 사업명 |
|---|---|---|
| 2005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중소기업개발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<br>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컨소시엄개발과제) |
| 2006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중소기업개발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<br>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컨소시엄개발과제) |
| 2007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)<br>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<br>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<br>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첨단장비활용과제) |
| 2008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<br>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첨단장비활용과제) |
| 2009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실용과제)<br>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실용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<br>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<br>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<br>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협력펀드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|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<br>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첨단장비활용과제)<br>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|
| 2010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창업・실용과제),<br>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서비스유망과제)<br>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산업보안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br>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<br>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슈퍼컴퓨터활용과제)<br>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글로벌투자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신기술사업화연계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협력펀드과제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(지정공모과제)<br>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<br>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<br>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첨단장비활용과제) |
| 2011 |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서비스혁신과제)<br>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산업보안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br>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<br>(기업제안과제)<br>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br>융복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br>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창업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성장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<br>(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<br>(R&D기획지원연계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농공상융합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<br>(글로벌협력과제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<br>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<br>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<br>융복합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<br>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연구기관제안과제)<br>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|
| 2012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서비스연구개발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br>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<br>(기업제안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기업제안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해외기술이전과제)<br>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<br>(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<br>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<br>(R&D기획지원연계과제)<br>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융복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br>융복합기술개발사업(농공상융합형과제)<br>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창업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성장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재도약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건강관리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앱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1인창조기업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투자연계멘토링과제)<br>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첫걸음과제) |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<br>(글로벌협력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산연협력과제)<br>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출연연과제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<br>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<br>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<br>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<br>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<br>융복합기술개발사업(센터연계형과제)<br>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사업화연계과제)<br>융복합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<br>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연구기관제안과제)<br>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<br>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<br>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|
| 2013 |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<br>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<br>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<br>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<br>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|
| 2014 |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<br>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<br>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<br>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<br>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|
| 2015 |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<br>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(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)<br>제품·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<br>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)<br>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<br>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<br>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|

※ '13년부터 사업단위로 '저변확대', '선택집중'을 구분하여 운영

## 참고 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개요

### □ 제도목적

○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 '핵심뿌리기술'을 보유하고,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'뿌리기술 전문기업'으로 지정

- 기술개발·자금·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(산업기능요원, 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전문기업을 우선 또는 우대)

### □ 제도개요

#### 가. 지정요건(①~④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)

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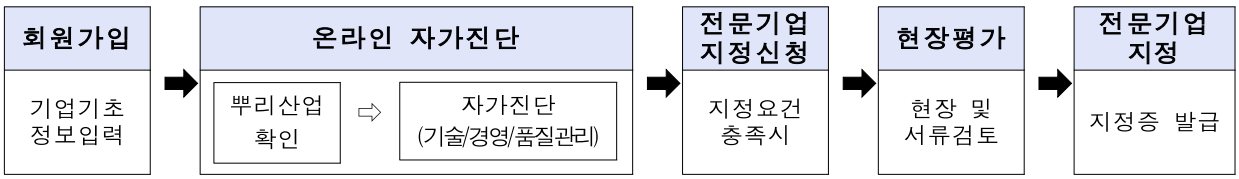
②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

③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

④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정요건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-85호, '14.6.2)

- 기술역량 :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/제품,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(60점 이상/100점)
- 경영역량 : 업력,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(60점 이상/100점)
-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

#### 나. 지정절차




### □ 시행주체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)

### □ 뿌리기업 지정현황

('13) 29개사 → ('14) 114개사 → ('15) 400개사(예정)

## 참고 3 뿌리산업의 개념

□ **뿌리산업**은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**'공정기술'을 활용**하여 **사업을 영위**하는 업종(「뿌리산업진흥법」 제2조)

○ 자동차·조선·IT 등 他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'공정기술'로 이용되며, 최종 제품의 **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**

*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(內在)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(根幹)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命名

○ 역사적으로 보면, **뿌리산업**은 청동기시대 무기류·장신구 제작을 위한 주조에서 시작,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**산업의 養分 역할** 담당

**< 뿌리산업의 변천 >**

(선사)



주조, 소성가공

(중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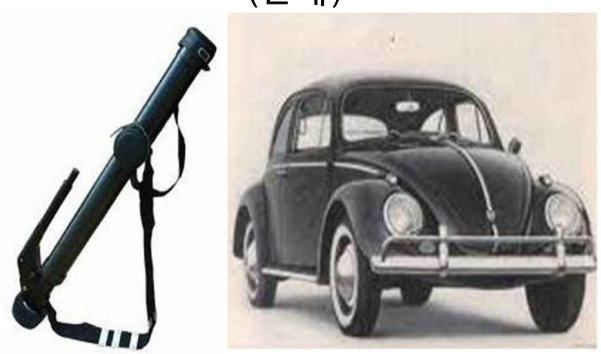
열처리, 표면처리

(현대)




주조, 금형, 용접, 표면처리

(근대)



용접, 열처리, 표면처리

□ 뿌리산업은 크게 **제품의 형상 제조공정**(주조·금형·용접·소성가공)과 **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**(열처리·표면처리) 등 2가지로 구분

| 특 징 | 구 분 | 정 의 |
|---|---|---|
|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 | 주 조 | 고체금속재료를 노(爐)에서 액체 상태로 녹인 후 틀 속에 주입·냉각하여 일정 형태의 금속제품을 만드는 기술 |
| | 금 형 | 동일 형태·사이즈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로 된 틀을 제작하는 기술 |
| | 소성가공 | 재료에 외부적인 힘을 가하여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킴으로써, 원재료를 일정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 |
| | 용 접 | 금속과 비금속으로 제조된 소재·부품을 열 또는 압력을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기술 |
| 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 | 열처리 | 금속 소재·부품에 가열 및 냉각공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금속조직을 제어함으로서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|
| | 표면처리 | 소재·부품의 표면에 금속(또는 비금속)을 물리·화학적으로 부착시켜 미관이나 내구성을 개선시키고, 표면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|

□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**뿌리산업의 장인 기술**은 그간 제조업과의 융·복합을 통해 **세계적인 명품의 탄생을 견인**

○ 스위스의 시계, 독일의 칼, 이탈리아의 자전거 및 영국의 만년필 등 **세계적인 명품**은 모두 튼튼한 **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**

* 명품에 대한 뿌리기술 활용 : (시계·칼) 주조·소성가공 (자전거) 금형·용접·소성가공, (만년필) 소성가공·열처리·표면처리

**< 세계적인 명품에 기여하는 뿌리산업 사례 >**


스위스 롤렉스


독일 헹켈


이탈리아 콜나고



영국 파커

○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조선·자동차·IT 등 **국내 주력산업의 성공**도 주조, 금형, 열처리 등 **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**